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86호
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
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(도시정비형 재개발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규정에 따라 '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'을 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> 2025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장

1.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

가. 대상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1단계 확대사업 대상지(도시정비형 재개발)

<u></u> 연번	자치구	역세권	위치	면적(m²)	비고
1	동작구	신대방삼거리역A	대방동 393-66 일대	21,398	
2	동작구	남성역A	사당동 252-15 일대	20,005.8	
3	동작구	남성역B	사당동 318-99 일대	10,667.7	
4	동작구	대람삼거리역	신대방동 588-7 일대	14,637.7	
5	서초구	내방역	방배동 872-11 일대	5,076.4	
6	관악구	봉천역A	봉천동 944-1 일대	7,552.5	
7	관악구	봉천역B	봉천동 923-1 일대	5,760.8	
8	서대문구	홍제역	홍제동 298-9 일대	42,515	
9	양천구	오목교역	신정동 86-45 일대	4,506	

나. 권리산정기준일: 2025. 2. 14.

다. 지정사유

-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, 단독·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, 건축물의 신축,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임
- 라.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

-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
- 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,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

마. 관계도면: 붙임 참조

※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2. 열람장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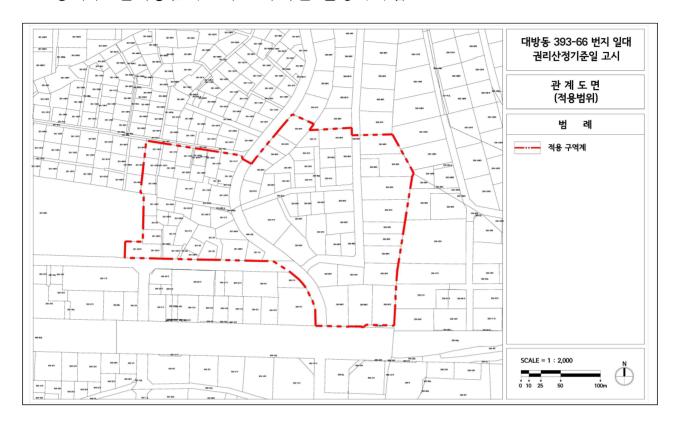
○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(☎02-2133-4655) 및 해당 자치구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.

자치구	열람부서	전화번호	주소	
동작구	핵심정책추진단	02)820-1983,1987,9325	동작구 장승배기로 161	
0 47	도시계획과	02)820-9630	등극 1 등등매기도 101	
서초구	도시계획과	02)2155-6783	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	
관악구	도시계획과	02)879-6441	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	
서대문구	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	02)330-4316	서대문구 연희로 248	
양천구	도시계획과	02)2620-3512	양천구 목동동로 105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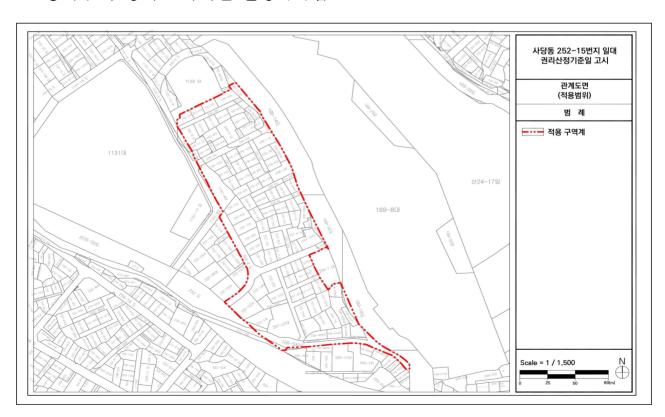
※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역세권 활성화사업(도시정비형 재개발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며, 건축물의 신축,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

■ 관계도면

1.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A 역세권 활성화사업



2. 동작구 남성역A 역세권 활성화사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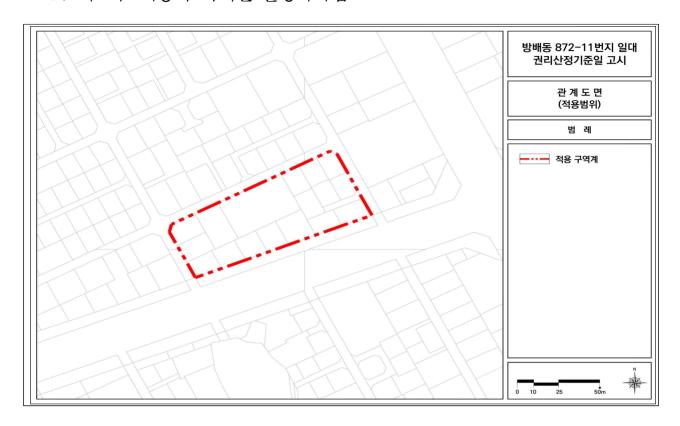
3. 동작구 남성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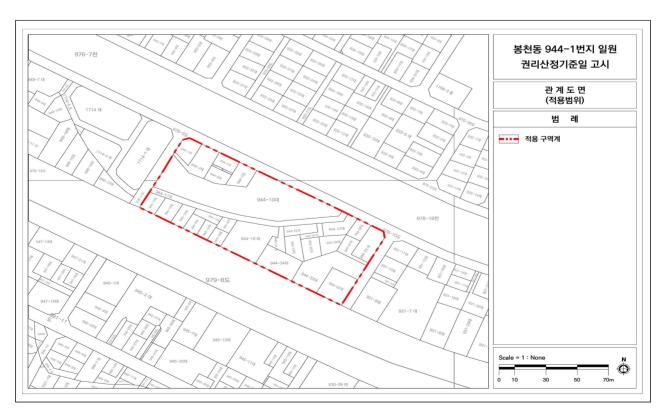
4. 동작구 대림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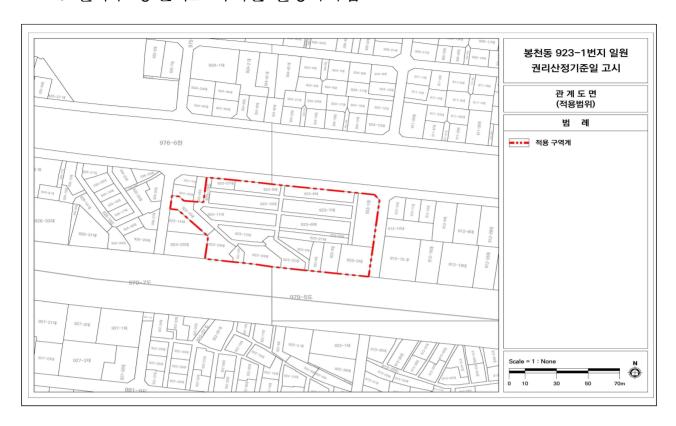
5. 서초구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시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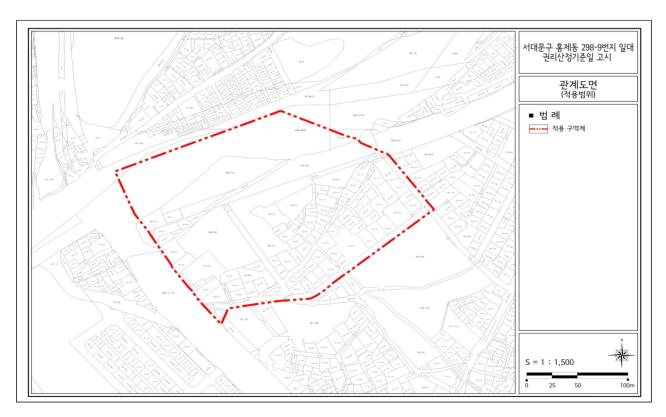
6. 관악구 봉천역A 역세권 활성화사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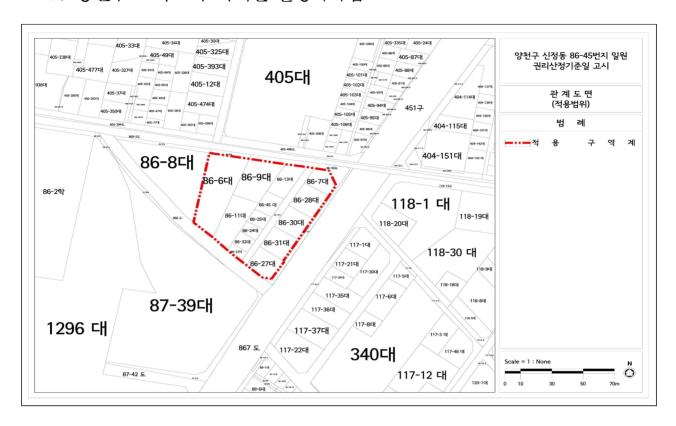
7. 관악구 봉천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



8. 서대문구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



9. 양천구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



○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(☎02-2133-4655) 및 동작구 도시계획과(☎02-820-9630) 및 핵심전략추진단(☎02-820-1983,1987,9325), 서초구 도시계획과(☎02-2155-6783), 관악구 도시계획과(☎02-879-6441), 서대문구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(☎02-330-4316), 양천구 도시계획과(☎02-2620-3512)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